



생체인식기술을 활용한 전자서명 도입 필요성

황인창 연구위원

요약

■ 2011년 말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보험계약 체결 시 전자서명을 허용함에 따라 전자청약이 보편화 되었음. 그러나 피보험자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한 상법규정에 따라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타인의 생명 보험 계약은 완전한 형태의 전자청약이 허용되지 않고 있음. 이를 개선하기 위한 상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전자서명의 정확성·보안성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임기만료 폐기됨. 이러한 기존 전자서명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생체인식기술을 활용한 전자서명 도입 및 상법 개정을 검토해 볼 수 있음. 한편 사생활 침해 등 생체정보 활용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생체인식 관련 기술의 표준화, 생체인식 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제도 정비, 생체정보 이용 및 관리의 투명성 확보 등이 필요함.

■ 2011년 말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보험계약 체결 시 전자서명을 허용함에 따라 전자청약 업무가 시행됨.

- 보험회사 또는 보험모집종사자는 보험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 계약의 중요사항을 계약자에게 설명하고, 이렇게 설명한 사항을 계약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기명날인·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함.¹⁾
- 2011년 12월 금융위원회는 비용 절감을 통한 보험료 절감 및 소비자 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시행령 개정을 통해 위 확인방법에 전자서명을 추가함.²⁾

■ 이후 태블릿(tablet)을 통한 전자청약이 보편화되었으나, 피보험자 생명보호 등 도덕적 위험 방지를 강조한 상법규정에 따라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타인의 생명보험 계약은 완전한 형태의 전자청약이 불가능한 상태임.

- 현재, 17개 생명보험회사가 태블릿을 통한 전자청약을 활용 중이고, 손해보험회사도 대형사의 경우 전체 계약의 약 20~30%가 전자청약을 통해 계약이 체결되고 있음.

1) 보험업법 제95조의2(설명 의무 등).

2) 보험업법 시행령 제42조의2(설명 의무의 중요 사항 등).

- 그러나 상법 제731조(타인의 생명의 보험)에서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보험 계약 체결 시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요구하기 때문에 완전한 형태의 전자청약은 불가함.

■ 이에 피보험자 동의 방식을 서면 외에 전자서명을 허용하는 상법 개정안이 2012년 12월 발의되었으나, 전자서명의 정확성·보안성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19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됨.

- 전자서명은 그 자체만으로는 본인의 것인지를 확인하기 어렵고 유사시 위조 여부 판정을 위한 필적 감정도 곤란하여, 위조 등 사고의 대비책이 상대적으로 미비하다는 우려가 있음.³⁾
- 또한, 타인의 공인인증서와 이에 대한 비밀번호를 습득한 자가 “타인의 동의 없이”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 상법 제731조 제1항의 입법 취지를 무력화시킬 우려가 있음.⁴⁾

■ 이러한 기존 전자서명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생체인식기술을 활용한 전자서명 도입 및 상법 개정으로 해결될 수 있음.

- 최근 공공, 의료 및 금융 분야를 중심으로 신체 데이터로 개인의 신원을 증명하는 생체인식기술⁵⁾이 새로운 보안 기술로 부상하고 있음.
 - 예) 지문의 특징정보를 추출·암호화·분할하고, 분산 보관 후 유사시 본인확인을 하는 기술
- 이러한 생체인식기술은 본인 확인에 있어 자필 서명보다 정확하고, 필적감정이 불가능한 일반 전자서명의 단점을 보완함.
- 또한, 생체정보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특징정보만 추출 후 암호화, 분할 과정을 거쳐 분산 보관하기 때문에 보안성도 강화됨.
- 따라서 보험회사는 생체인식기술을 활용하여 전자서명의 정확성·보안성 등을 강화하고, 이에 맞춰 타인의 생명보험 계약도 전자청약이 가능하도록 상법이 개정될 필요가 있음.

■ 한편 생체정보 활용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생체인식 관련 기술의 표준화, 생체인식 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제도 정비, 생체정보 이용 및 관리의 투명성 확보 등이 요구됨. [kiri](#)

3) 법제사법위원회 검토보고서.

4) 대한변호사협회 의견.

5) 신체의 고유한 특성(지문, 홍채, 망막, 정맥 등)이나 행동적인 특성(목소리, 필체, 체형, 걸음걸이 등)을 이용하여 개인을 식별하는 기술.